

외국의 환경마크제도 현황



최 홍 식 / 환경보전협회 사무총장

③ 환경마크 상품 인정절차

- 신청: 제품생산자들은 캐나다표준협회(CSA)를 통하여 환경마크 부여신청을 한다. 신청수수료는 800불이상이며, 제조공정의 복잡성과 검사를 요하는 공정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 확인: 캐나다표준협회(CSA)의 관계자가 공정을 방문하여 환경마크 부여기준을 제품과 생산공정을 평가한다.
- 인정: 환경마크사용 허가는 캐나다표준협회(CSA)가 담당하며 환경마크 부여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제품에 대하여 3년간의 기간 내에서 환경마크사용을 허가한다. 캐나다표준협회에서는 동 기간중 아무때나 사전통보없이 현장을 방문하여 부여기준에 계속 따르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3) 관련 위원회 및 사무국

(가) 독일의 환경마크 관련기관

① 환경마크위원회(Environmental Label Jury)

이 기구는 환경마크 부여대상이 될 수 있는 상품그룹을 선정하고 이들 각 그룹에 대한 "부여기준" 및 동 기준에 적합하다는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하여 정한다. 이 위원회는 또한 연방환경청에 대하여 관련 그룹의 상품에 대한 엄밀한 검사후 검사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환경마크위원회의 구성요원은 다음과 같다(1988부터

1990년까지 임기 3년까지).

- Pfarrer Professor Dr. Ing. h.c Kurt Oeser
독일 신교도측 환경대표-의장
- Gerd Billen
독일자연보전연합
- Dr. Hannelore Friege
독일환경 및 자연보전협회
- Prof. Dr. Wolfgang Haber
환경문제 전문가 협회
- Irmgard von Meibom
소비자 협회
- Dr. Eberhard Meller
독일기업연합
- Annette Pfeiffer
언론인
- Armin Schmulling
환경문제협회
- Dr. Werner Schneider
독일 무역조합연합회

이외에 각주의 환경관계 기관장 중에서 선정된 위원이 동 위원회에 참석한다. 환경마크위원회에 연방환경, 자연보전 및 원자력안전부, 연방환경청, 독일 품질보증 및 마크연구소에서도 참여한다.

동 위원회는 1년에 2회(5월, 12월) 개최된다.

환경마크위원회의 위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환경마크위원회에서 투표를 할 상황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과반수제에 의한다.

동 위원회의 결정결과는 연방환경, 자원보전 및 원자력안전부에서 유인물을 발행하여 공개한다.

② 독일 품질보증 및 마크연구소 (비영리단체)

-RAL(German Institute for Quality Assurance and Labe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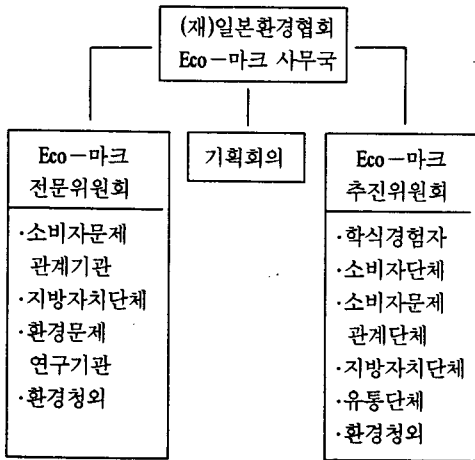
이 기구는 전문가 공청회를 준비하고 동 공청회를 주최하며 이 공청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또 제작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하여 모든 요구조건이 충족되었는가의 여부, 모든 필요한 증명서가 제출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연방환경청 및 제조업체를 관할하는 주정부에 이에 대한 의견조치를 한다. RAL은 모든 부여기준이 충족될 경우 제작자에 환경마크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③ 연방 환경청 (Federal Environmental Agency)

이 기관은 새로운 환경마크 제안을 어떤 개인이나, 단체로부터도 접수하여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환경마크위원회에 송부하고 이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환경마크위원회에서 선정된 대상품목은 연방환경청에 정밀검사 요청을 하게 되며, 연방환경청은 필요한 검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부여기준 제정을 요청한다.

(나) 일 본

① Eco-마크 사업의 조직



-사무국 직원은 3명이며, 전문위원회와 추진위원회

의 준비, 기업의 Eco-마크 제안을 받고, 자료정리(위원회 제출), 선정된 제품의 기준 및 규격(추진위원회), 연락, 홍보, 계약, 사용자 취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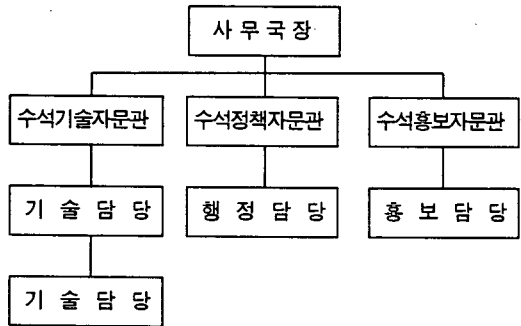
(다) 캐나다

① 환경마크위원회(Environmental Choice Board)

위원성명	소속	직위
Pat Delbridge	위원장	
Cordon Atherley	Atherley, O'Connell & Associates	조합장 (Partner)
Jack Brooks	3M Canada	부사장
David Cohen	Dian Cohen Productions 회사	회장
Pat Delbridge	Pat Delbridge Associates 회사	회장
Janice Harvey	New Brunswick의 보존위원회	회장
Joe H.Hilliard 박사	Manitoba 연구위원회 식품화학	부장
Peter Jacobs	Montreal 대학교	교수
Geraldine	캐나다의 과학위원회	전임장
Kenny-Wallace		
Alasdair Makichan	캐나다의 소매(小賣)위원회	회장
France Mercier		소비자대표
James Patry	T.E.S 회사	부사장
Richard Plain	Alberta 대학교	교수
Cuyllaine Saucier	M.C. F.C.A	법인회장
Derek Stephenson	자원수집체계회사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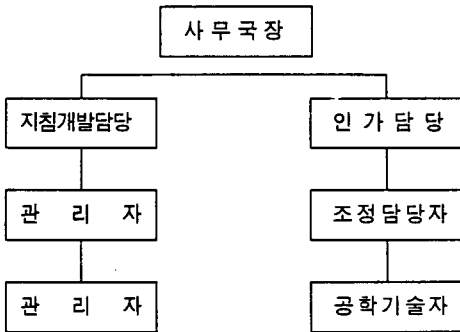
위원회에서 은퇴

② 사무국(Secretari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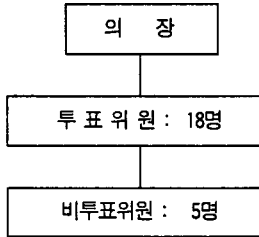


③ 캐나다 표준협회내의 환경마크과(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Environmental Choice Division)

환경공청회



④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4) 사 용 료

(가) 독 일

독일 품질보증 및 마크연구소의 환경마크신청시 납부금액은 300마르크이며(한화로 약 132,000원) 계약 신청금액도 300마르크이다. 계약체결 이후에는 누진금액의 연간 사용료를 동 연구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환경마크 부착상품의 연간 매출고 추정액에 따라 달라진다.

1990. 1.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독일품질보증 및 마크위원회로의 연간 사용금액

연간 총매상고 (단위 백만마르크)	연간 사용료	사용료 범주
0.5 까지	350.00	1
0.5 - 2	700.00	2
2 - 5	1,400.00	3
5 - 10	2,750.00	4
10 이상	3,980.00	5

이외에 모든 환경마크 사용자는 광고기금에 기여금

을 납부해야 한다.

(나) 일 본

Eco-마크 사용료(년액)는 다음의 정하는 바와 같다.

사용료는 2년분을 일괄하여 지불하여야 한다.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치 아니한다.

구 분 (인정상품 1가지당 표준소매가격)	사 용 료 (인정상품 1가지당)
1-1,000엔 미만 상품	40,000엔
2-1,000엔 이상 10,000엔 미만 상품	60,000엔
3-10,000엔 이상 100,000엔 미만 상품	80,000엔
4-100,000엔 이상 상품	100,000엔

(다) 캐나 다

환경마크 사용에 대한 연간 사용료는 동 제품의 연간 매출액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다.

매 출 액 (달러)	사 용 료 (달러)
100,000 까지	300
100,001 이상 250,000 이하	750
250,001 이상 500,000 이하	1,500
500,001 이상 1,000,000 이하	2,500
1,000,000 초과	5,000

(5) 상품그룹선정 종류 및 특징

(가) 독 일

1990년 5월 현재 60개품목 약 3,500종의 상품에 대해 환경마크를 부여받았다. "환경마크 상품필요조건, 마크사용자 및 상품"이란 안내책자에 최근의 환경마크 부착상품과 동 상품 사용자에게 관한 자료가 나타나 있다. 동 책자는 독일 품질보증 및 마크연구소에서 발행한다. 환경마크는 환경표창제도가 아니며 경쟁법(law of competition)의 견지에서 보면 어떤 특혜도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환경마크가 부착되었다고 하여 환경에 완전히 무해하거나 유해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마크는 -반대로 -환경에 특히 유해한 그룹의 상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바 그 이유는 이러한 그룹의 상품들일수록 개량의 여지가 많으므로 그만큼 환경과의 관련성이 크기 때문이다.

환경마크는 특히 이러한 그룹의 상품들에 대하여 환경에의 해가 좀더 적은 상품을 개발토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마크는 특히 문제가 되는 그룹의 제품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 상품중에 환경적 질을 개선토록 장려하는 것이다.

또한 외국상품에도 환경마크를 부여하고 있으며, 총 계약건수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6) 환경마크 대상품목 선정기준 및 내규실례

(가) 독 일 (60종)

◎ 재활용병

환경측면 : 재활용병을 사용할 경우 폐기물 발생량을 그 만큼 줄이고 천연자원 및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다. 1리터들이 음료수의 경우 1회용 용기는 폐기물 발생량을

-중량대비 12배,

-체적대비 32배정도 늘어난다.

또한 1회용 포장은 재활용병에 비해 에너지 소모량이 6배가 된다(세척에 소요하는 비용 포함).

필요조건 : 재활용 가능한 음료수병중

-재활용율이 높고

-뚜껑이 납성분이 없고

-청동(Gold Bronze) 성분을 함유한 상표가 붙어 있지 않을 것

(나) 일 본 (31종)

◎ 폐식용유 재생비누

-비누원료로서의 유지는 식용폐유(식용폐유를 정제 혹은 지방산을 가공한 것을 포함)를 전유지의 50% 이상 사용할 것

-식용폐유는 가정용, 업무용의 종별은 불문한다.

-제품의 품질은 일본공업규격 JISK 3303의 규정에 적합할 것

-신청자의 명칭 및 주소가 제품에 명기될 것

-가정용 합성세제 및 가정용 비누의 표시에 관한 공정거래 규약을 준수할 것

-마크표시는 『물을 깨끗하게』로 한다.

(다) 캐나다 (14종)

◎ 재사용이 가능한 시장백(Bag)

강하고 질긴 천연 또는 합성물질로 만들어져야 하며 최소한 15ℓ의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젖은 상태에서 10kg을 최소한 300회이상 운반할 수 있어야 하며 해롭거나 유독한 물질을 배출하지 않아야 한다.

국민연금 5~9인 사업장 당연적용 확대

국민연금 당연적용(강제적용)사업장의 범위를 현재 상시 10인 이상에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확대함에 따라 5~9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37만여명의 근로자와 사용자도 '92.1.1일부터는 사업장을 단위로 당연히 "국민연금"에 당연적용가입 해당으로 되어 자진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 일제 가입신고 기간 : '91.10.1~'91.11.31 (2개월)

○ 가입신고대상 : 상시 5~9인 이상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

○ 가입신고 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 문의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울지부

(277-3871~5)

- 일제신고기간 경과후 미신고 사업장 처리 : 국민연금법 제104조 제2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규정에 의한 고발조치
- ▷ 국민연금에 관한 보다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울지부 서무과 (277-39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임꾼을 찾습니다 ※

☐ 대기경력자 (3년이상)

-분야 : 설계·영업·시공분야

☐ 연락처 : 서울 플랜트(Tel 679-6402~3)